

## 붙임 4-1

### 전형별 가점기준(일반, 보훈, 경력직, 기능직, 실무직)

| 구 분                | 우대사항                  |       | 적용전형 |     |     | 부여가점<br>(만점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서 류  | 필 기 | 면 접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 별<br>가 점         | 취업지원<br>대상자(법정)*      |       | ○    | ○   | ○   | 5% 또는 1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관련법률에 의한<br>해당자격 증빙서류<br>제출자에 한함<br>(경력단절여성에 대한<br>가점은 시간선택제<br>채용에 한함) |
|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                   |       | ○    | ○   | ○   | 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국민기초<br>생활수급자         |       | ○    | -   | -   | 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다문화가족의 자녀             |       | ○    | -   | -   | 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북한이탈주민                |       | ○    | -   | -   | 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경력단절여성                |       | ○    | -   | -   | 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자립준비청년                |       | ○    | -   | -   | 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 반<br>가 점         | 한국사 능력검정              |       | ○    | -   | -   | 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3급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<br>근무경력          |       | ○    | -   | -   | 2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실근무경력<br>만3년이상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격증<br>가점          | 전문자격증<br>보유자          |       | -    | ○   | -   | 변호사,<br>공인회계사,<br>세무사,<br>감정평가사,<br>공인노무사,<br>기술사, 건축사 | 5% | 공단이 인정하는<br>국가기술자격법 및<br>기타법령에 의한<br>자격증을 소지하고<br>해당분야에 응시한<br>자에 한함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일반자격증<br>보유자          |       | -    | ○   | -   | 기사, 기능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%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     | 산업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%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     | 기능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%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고졸전형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우리공단<br>청년인턴<br>가점 | 2023년,<br>2024년<br>인턴 | 우수인턴  | ○    | ○   | -   | 서류전형 면제, 필기전형 2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인턴수료(만근) 후<br>2년 이내 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인턴수료자 | ○    | ○   | -   | 서류전형 5%, 필기전형 2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인턴수료(만근)자에<br>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모든 가점은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
- 특별가점 내의 우대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, 합산하여 특별가점으로 인정
- 일반가점, 자격증가점, 청년인턴가점 내의 각 우대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, 가장 유리한 1개만 해당가점으로 인정
- 특별가점, 일반가점, 자격증가점, 청년인턴가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하여 인정
- 청년인턴 가점은 우리공단 인턴수료(만근)일로부터 2년간 부여하되, 우수인턴의 우대가점은 인턴수료(만근) 후 2년 이내 1회로 한정
  - \*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점상한제 적용(30%)
  - \*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적용(보훈 전형은 제외)하고, 전형단계별 만점의 40%미만 득점자에게는 미부여(필기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% 미만 득점 시 미부여)